

대구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268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이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현태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조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15.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2046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1,287,918,170원,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 E, F에 대하여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 10. 29. 접수 제23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E, F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0. 5. 7. 접수 제88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1,287,918,170원,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 E, F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E, F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C은 채석업, 토사석 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1987. 12. 2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14년경 경영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 C에 입사한 G는 피고 C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피고 C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자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G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의 자녀 L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5. 2. 16. 원고를, 2015. 4. 2.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피고 C이 우발적인 채무로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재산과 설비를 H에 이전한 후 원고의 명의로 골재선별파쇄업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H 및 피고 C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1) 피고 C은 2016. 5. 25.부터 2016. 8. 23.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4개 필지에 관하여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는 2017. 6. 21.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포함한 10개 필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H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 C의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722호로 H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H가 대구고등법원 2018나234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H가 대법원 2019다2374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라 한다).

3) 이후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C은 2019. 10. 2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4개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1개 필지에 관하여 2019. 10. 29.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20. 5. 7.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H와 피고 C, B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H는 전항과 같이 H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 C이 H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2019. 10. 25.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591호로 피고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피고 B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8. 13. H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H가 대구고등법원 2020나248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3.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선행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이라 한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7,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6. 27.까지 피고 C의 J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741,556,82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2. 5.부터 2016. 4. 19.까지 피고 C의 K 등 채권자 21명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무 합계 546,361,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민법 제469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피고 C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87,917,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의 소외 유한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72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72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민사재판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종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반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만으로 종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증명효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판결 참조), 특히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 중에서 한 사실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강력한 증명효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명효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6 내지 25, 27, 28,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의 피고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소외 유한회사와 원고 사이에 2016. 3. 11.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원리금 합계 721,666,344원)을 대금 748,415,506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유한회사의 계좌로 2016. 3. 2.부터 2016. 6. 27.까지 합계 748,415,506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 D이 피고 C의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72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채권자 K 등 21인의 계좌로 2016. 2. 5.부터 2016. 5. 19.까지 합계 140,639,500원이 송금되었고, 채권자 K 등 21인이 피고 C에 대한 채권 합계 546,361,342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16. 5. 11.경 피고 C에게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5, 8, 9,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피고 C이 H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H와 원고는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로부터 양도받은 피고 C에 대한 채권 748,415,506원을 H에게 양도하여 H가 피고 C에 대하여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H가 피고 C의 K 등 21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들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채권 합계 546,361,342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양수금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권 발생 경위 및 채권 금액에 관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의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구상금채권과 사실상 동일한 채권으로 보인다.

②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H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 D와 G가 피고 C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피고 C의 재산, 설비 등을 H에게 이전하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거래 내역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정한 뒤, 피고 C이 H에게 이전한 재산, 설비 등으로 마련된 돈으로 거래한 금전거래내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H와 원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및 채권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H와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증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도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설령 위와 같이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 각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스스로 위 각 채권이 원고가 아니라 H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현재에도 위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⑤ 한편, H는 선행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도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① 기재와 같이 H가 피고 C에 대하여 각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제1심 법원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심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위 각 양수금채권 및 이와 동일한 금액의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양수금채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H는 모두 G가 자신의 자녀 L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원고는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등에서 H가 피고 C에 대하여 위 각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에서 채권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주식회사 B,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전득자인 피고 E, F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E, F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E, F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B,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홍은아, 판사 함병훈

별지

목 록

1. 경북 칠곡군 N 잡종지 5173㎡
2. 경북 칠곡군 O 잡종지 3049㎡
3. 경북 칠곡군 P 임야 3092㎡
4. 경북 칠곡군 Q 임야 46235㎡
5. 경북 칠곡군 R 임야 6090㎡. 끝.

- 1) 이에 대하여 H가 대법원 2021다227124호로 상고하였는데, 당시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7. 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